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 판정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출입국 심사대 확충에 따른 심사 운영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부서장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송무행정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57조) 및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788”을 “792”로, 일반직 계 “745”를 “749”로,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6”을 “74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852”를 “22,862”로, 일반직 계 “22,833”을 “22,84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22,627”을 “22,637”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인권국 1개 과	9명
2) 국제법무국	1명
3) 국제법무국 2개 과	9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명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1개 과	1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2)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3)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9명
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50명
5)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3명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7)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8)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9)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10)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계센터)	88명
11) 보호외국인의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1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13)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계센터)	20명
14)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5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2장 한시정원</u>	<u><삭 제></u>
<u>제57조(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u> <u>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u> <u>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u> <u>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u> <u>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u> <u>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u> <u>을 법무부에 둔다.</u>	<u><삭 제></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8</u>	<u>792</u>	+4
·	·	·	
·	·	·	
일반직 계	<u>745</u>	<u>749</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36</u>	<u>740</u>	+4
·	·	·	
·	·	·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852</u>	<u>22,862</u>	+10
일반직 계	<u>22,833</u>	<u>22,843</u>	+1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627</u>	<u>22,637</u>	+10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